

미국투자이민 \$500,000 신청가이드

1. \$900,000 EB-5 투자이민 개요 (2019년 11월 개정)

직접투자	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180만불 투자 + 10명 이상 직접 고용창출
리저널센터	리저널센터(Regional Center)를 통해 TEA 지역에 투자할 경우 90만불 투자 + 직/간접 고용창출 인정
TEA (고용촉진지구)	TEA (Targeted Employment Area): 인구 2만명 미만의 소도시 또는 전국 평균실업률의 1.5배 이상지역

2. 투자금 상향개정 후 진행상황 및 \$500,000 투자가능일정

- 01
- 2021년 6월2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투자금인상에 관한 “2019 미국투자이민 현대화규정” 무효 판결
- 02
- 6월30일자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접수 중단 (직접투자만 가능)
- 03
- 7월6일 미 이민국에서 투자이민 현대화규정 이전의 규정 적용 발표, 당분간 최소투자금은 기존 50만불로 유지
- 04
-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연장법안 통과필요, 국회일정에 따라 9월30일 또는 10월초로 예상
- 05
- 미 이민국에서 투자금을 다시 \$1800,000과 \$900,000(TEA지역)로 올리는 정책 발표예상
- 06
- 60일 후 법안이 시행되므로 유예기간인 60일 동안은 기존 \$500,000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접수 가능
- 07
- 이민국접수가 가능한 60일을 염두해두고 투자금 관련 자금출처서류 준비, 이민국법안 공식발표 후 투자금송금

◆ 위의 60일 내 50만불로 접수가능

3. 신청자격 및 투자조건

신청자격	만18세 이상 무범죄 경력 \$900,000 \$500,000 투자 투자금 출처 증빙(증여, 상속, 배우자자산 인정)
------	---

4. 구비서류 (아래의 자금출처증빙서류만 우선 준비)

서류명	발급기관
신청자가 사업자일 경우: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(배우자 명의로 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필요) 직장인의 경우 추후 재직증명서 발급 (비자발급용)	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회사
소득금액증명원(영문): 모든 기간 발급-신청자 본인 /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을 때는 배우자도 필요 -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-직장인의 근로소득 증명원 ※ 처음 소득신고때부터 현재 기간까지 전체 기간 발급	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
투자금 출처 증명 ※ 투자금 출처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마다 다르므로, 준비 전에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예) 부동산 담보 대출 또는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준비할 경우 - 부동산 매입계약서, 등기부등본 (설정기록 포함) - 대출계약서 +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기록 - 부동산 매도 계약서 + 매도금이 입금된 계좌기록 예) 적금, 예금, 보험, 주식으로 투자금을 준비할 경우 -예금/적금/보험 시작일, 납입금액, 현재까지 총 잔액 -주식 시작일, 납입금액, 년 수익금액, 현재까지 총 수익 잔액	

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



02-555-5333



온라인상담 (클릭)



카카오톡상담 (클릭)